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변경 사항	결산	변동성
1	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 4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4), 5)	○	○
2	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	○	○
3	미래에셋 5 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	○	○
4	미래에셋 KRX300 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(주식-파생형)	4), 5), 6)	○	○
5	미래에셋개인솔로몬 MMF2 호(국공채)	4), 5)	○	○
6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30 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), 5)	○	○
7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	○	○
8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채권-재간접형)	4), 5)	○	○
9	미래에셋글로벌 EMP 인컴배분증권투자자신탁 1 호(UH)(주식혼합-재간접형)	4), 5)	○	○
10	미래에셋글로벌 ESG 사회책임투자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(주식)(UH)	4), 5)	○	-
11	미래에셋글로벌 ESG 사회책임투자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(주식-파생형)(H)	4), 5)	○	-
12	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3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), 5)	○	○
13	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투자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4), 5)	○	○
14	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
15	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투자자신탁(채권혼합)	-	○	-
16	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투자자신탁(주식혼합)(선택형)	4), 5)	○	○
17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4)	○	○
18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 G 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4)	○	○
19	미래에셋스마트롱숏 3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), 5)	○	○
20	미래에셋스마트롱숏 30 증권투자자신탁 2 호(채권혼합)	4), 5)	○	○
21	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	○	○
22	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 Q 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4)	○	○
23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-
24	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4), 5)	○	○
25	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4), 5)	○	○
26	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자신탁 K-1 호(주식)	-	-	○
27	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	○	○
28	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	4), 6)	○	○
29	미래에셋장기성장리서치소득공제장기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4)	○	○

30	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), 5), 6)	○	○
31	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-파생형)	1), 4), 5)	○	○
32	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), 5)	○	○
33	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4), 5)	○	○
34	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
35	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), 5)	○	○
36	미래에셋차이나 H 레버리지 2.0 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4)	○	○
37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 1 호(H)(주식)	6)	○	-
38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 1 호(UH)(주식)	4), 5)	○	○
39	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6)	○	-
40	미래에셋코리아레버리지 2.0 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4)	○	○
41	미래에셋코스피 200 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	○	○
42	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 Q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, 6)	○	○
43	미래에셋클린테크증권투자신탁(주식)	4), 5)	○	-
44	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)	○	○
45	미래에셋하나 1Q 연금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4), 5)	○	○

2. 변경 사항:

- 1) 가입자격 변경
- 2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3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- 4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6) 법 개정사항 반영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5월 13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- 1) 가입자격 변경

펀드명	변경 전	변경 후
종류 I	법인세법 시행령 17 조의 2 의제 8 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,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,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(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)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	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),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,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

- 4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
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 4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4	4	8.46	8.31
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2	2	23.14	22.85
미래에셋 5 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1	1	25.05	24.6
미래에셋 KRX300 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(주식-파생형)	2	1	23.88	27.09
미래에셋개인솔로몬 MMF2 호(국공채)	6	6	0.06	0.05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30 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7.06	7.22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2	2	20.62	21.41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채권-재간접형)	4	4	9.75	9.66
미래에셋글로벌 EMP 인컴배분증권투자자신탁 1 호(UH)(주식혼합-재간접형)	3	3	11.34	11.47
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3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6.99	7.39
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투자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2	3	15.56	14.83
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9.55	9.67
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투자자신탁(주식혼합)(선택형)	2	2	18.77	18.52
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1	1	28.69	27.9
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 G 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2	2	21.52	20.93
미래에셋스마트롱숏 3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2.34	2.14
미래에셋스마트롱숏 30 증권투자자신탁 2 호(채권혼합)	5	5	2.26	2.08
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2	2	23.97	23.04
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 Q 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3	3	14.06	14.32
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5	5	4.65	4.3
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3	13.15	12.07
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자신탁 K-1 호(주식)	2	2	19.54	19.25
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2	2	18.85	19.1
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	4	4	6.55	6.26
미래에셋장기성장리서치소득공제장기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3	14.62	14.71
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6.89	6.7
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-파생형)	2	2	21.24	20.44
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7.06	7.22
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)	5	5	3.51	3.7
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9.59	9.61
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7.72	7.31
미래에셋차이나 H 레버리지 2.0 증권투자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1	1	42.15	44.13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자신탁 1 호(UH)(주식)	2	2	24.36	19.25
미래에셋코리아레버리지 2.0 증권투자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1	1	47.67	47.54
미래에셋코스피 200 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2	2	23.96	23.57
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 Q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2	2	16.89	16.12
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 4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8.49	7.71

5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평 가방법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 이 발표하는 가격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 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 가</p>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(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 이 발표하는 가격(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 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 가(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 종시가)</p>

6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. 2. 집합투 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항 없음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 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 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 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.

7) 법 개정사항 반영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대상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 <중략> <u>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</u> <생략>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 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 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2. <생략> 나. <삭제>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

	<p>②~③ 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②~③ <생략></p> <p>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--	---	---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